

토론회 자료집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2시

주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목차

---

목차	2
프로그램	3
인사말	4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6
토론1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토론문	15
토론2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19
토론3 국가경찰위원회 개혁방안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를 중심으로	22
토론4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25

## 프로그램

---

- 14:00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14:10 인사말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14:15 발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 14:45 지정토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가나다 순)
- 15:25 종합토론
- 16:00 폐회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바쁘신 시간에도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찰권에 대해 항상 날카로운 지적과 귀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님께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아주신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김명연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님, 윤재설 정의당 정책연구위원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님,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 하주희 변호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도입돼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다, 경찰청장이 부의한 안건만을 단순 심의·의결하다 보니 사실상 경찰청 자문기구 혹은 보조기구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1명인 상근 상임위원은 매년 경찰 출신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들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제

#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 국가경찰위원회의 과거와 현재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당시 통일민주당을 비롯한 3개의 야당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치안본부를 개혁하기 위해 각자 「경찰법」 제정안을 발의하였고, 그 후 야3당은 통합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야3당은 통합안의 제안이유에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 내무부 산하의 경찰기구를 독립시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민주적 관리하에 능률적 집행을 위한 청을 설치토록 함”이라고 하여, 당시 대표발의한 김봉호 의원을 포함한 164명의 입법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치안본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며, 그 산하에 집행기구인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경찰조직을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은 야당의 통합안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안을 발의하였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정부안을 국회에서 찬반 토론도 없이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여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안은 야당의 통합안과는 다르게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을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였고,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경찰운영 관장’과 ‘경찰청의 관리·감독’이 아닌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로 제한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무부 장관에게 그 심의·의결된 사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여 경찰위원회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의 필요성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경찰위원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본래적 요인’, 둘째, 불안정한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외부적 요인’입니다.

우선 본래적 요인을 살펴보면, 애초에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위원회는 애초 야당 통합안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경찰청을 관리·감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적 통제 역시 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경찰위원회가 형식화, 자문기구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문기구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위원회는 경찰권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로 통·폐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 권한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만 명을 상회하는 인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 권력기관인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통제는 분명 필요합니다. 만일 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역대 경찰청장들이 권력형 비리에 휘말리지 않고 아름답게 퇴장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역시 경찰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했던 거대 형사사법기관은 이제 그 권한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는 시대적 요청이자 과제입니다. 경찰 권한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창설한다면 그만큼 경찰

고위직만 증설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 명칭만 바뀐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외부적 요인을 살펴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전국 18개 시·도에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은 일부의 사무만을 분담할 뿐 조직이 신설되거나 국가경찰의 신분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한 경찰 권한의 수평적 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전면적·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면 국가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는 반면에,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되어 각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면 되므로, 굳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와 업무혼선 우려의 해소 등의 이유로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경찰권 분산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국적으로는 교육 자치와 행정 자치에 이어 경찰 자치도 언젠가는 이룩될 것으로 희망하지만, 이는 희망일 뿐 언제 실질적 의미의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개혁을 통한 경찰권한의 견제 및 통제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민간이 주도하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가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찰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실질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경찰위원회의 독립성·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고, 경찰청을 그 산하에 두는 조직체계로 변경하고, 둘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를 9명으로 증원하여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회와 법원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민주성을 제고하며, 셋째,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요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승진 인사에 있어서 총경 이상을, 보직 인사에 있어서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제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권 침해나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권과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며,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한에 대한 이행담보장치로서,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위원회에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막강해진 권한을 가진 경찰위원회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보고의무 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강화된 권한의 원활한 행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사무를 주 1회로 확대하고, 위원회에 적정한 규모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3대 국회에서 야3당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려 하였으나, 도입이 여의치 않자 치안본부를 통제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찰위원회를 통합안에서 제안하였는데, 야3당이 제안한 경찰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의 경찰위원회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야3당과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 설치를 제안 또는 권고한 것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는 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중앙집중화되고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경찰개혁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경찰권의 행사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경찰에 대한 시민 통제기구’를 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도 함께 권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표1]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현행 경찰위원회 비교

구분	기 존	경찰개혁위 권고안
설치 및 법적 지위	·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소속)
위원회 구성	· 총 7명 (위원장 1, 상임위원 1) · 전원 대통령 임명 · 위원장은 비상임,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차관급)	· 총 9명 (위원장 1, 상임위원 2) · 대통령 임명 - 국회 선출 3 - 대통령 지명 3 - 대법원장 지명 3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위원장은 장관급) · 경찰이었던 사람은 위원장 불가
임기	· 임기 3년, 단임 · 보궐 시 잔여 임기	· 임기 4년, 단임 · 보궐 시 잔여 임기
업무 및 권한	· 주요 경찰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	· 경찰 관련 법령 외에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 총경급 이상 승진, 경무관급 이상 전보 등 인사권 ·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요구권 ·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조치 요구권 ·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자체 규칙 제정권
사무기구 및 회의운영	· 경찰청에서 사무 수행(별도 사무기구 없음) · 정기회의 월 1회	· 위원회 산하별도 사무처 설치(연구 검토 담당하는 전문위원) · 정기회의 주 1회
기타		· 국회 요구 시 출석하여 보고 의무 · 위원장은 표결권 없고 캐스팅보트 행사

##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개혁 방향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상당히 유사하며, 특히 국가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같습니다.

우선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의 구성 역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되,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사법부에는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경찰 출신의 상한을 20/100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경찰 출신 위원이 상임위원을 맡아왔고, 경찰 출신 위원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전관이 아닌 위원들도 경찰 행정에 대한 보좌를 받고,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두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구성 역시 경찰 출신 비율에 상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의 범위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보다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경찰청장이 경찰청 내부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제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보직 인사 모두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여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당한 권한 행사나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위원회가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게 하여 실질적인 감시·견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그 심의·의결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감사·감찰·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히 가칭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제도를 위원회에 두어 국가경찰의 부당한 인권 침해 행위를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근 경찰 내부 통제의 일환으로 시·도청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인권관'을 두었기 때문에 두 제도가 상호 맞물려 경찰의 부당한 인권 침해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표2] 경찰개혁네트워크안과 경찰개혁위 권고안 비교

구분	경찰개혁위 권고안	경찰개혁네트워크안
설치 및 법적 지위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소속)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소속)
위원회 구성	· 총 9명 (위원장 1, 상임위원 2) · 대통령 임명 - 국회 선출 3 - 대통령 지명 3 - 대법원장 지명 3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위원장은 장관급) · 경찰이었던 사람은 위원장 불가	· 총 9명 (위원장 1, 상임위원 2) · 대통령 임명 - 국회 선출 6 - 대통령 지명 3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위원장은 장관급)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 공수처 직원 또는 군인의 직 (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불가 · 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의 비율이 20/100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임기	· 임기 4년, 단임 · 보궐 시 잔여 임기	· 임기 3년, 단임 · 보궐 시 잔여 임기
업무 및 권한	· 경찰 관련 법령 외에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 총경급 이상 승진, 경무관급 이상 전보 등 인사권 ·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요구권 ·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조치 요구권 ·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자체 규칙 제정권	· 경찰 관련 법령 외에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인사안에 대한 동의 ·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요구권 ·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조치 요구권 ·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자체 규칙 제정권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
사무기구 및 회의운영	· 위원회 산하별도 사무처 설치(연구 검토 담당하는 전문위원) · 정기회의 주 1회	· 위원회 산하별도 사무처 설치 ·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구성 중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30/100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기타	· 국회 요구 시 출석하여 보고 의무 · 위원장은 표결권 없고 캐스팅보트 행사	· 국회 요구 시 출석하여 보고 의무 · 국가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둔다(인권감독관에게 조사 권한 부여)

## 나가며

정의와 공정은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형사사법기관 내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지 시민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권력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 시민에 대한 경찰권 행사 역시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고 비대화 된 경찰 권한을 경찰 스스로 제어하며, 외부적으로도 개혁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인권친화적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경찰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안성훈(2018)“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노섭·안정민(2017) “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방안” 「경찰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이상원(2013) “한국의 경찰위원회 제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5호, 한국경찰학회

김인회(2021)“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준평

황문규(2020)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2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연혁(2020), 경찰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보도자료 2017. 7. 20.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보도자료 2017. 11. 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보도자료 2017. 11. 8. 경찰청

경찰법안(야3당 통합안), 의안번호 130741. 제안일자 1989.11.30. 김봉호 의원 등 7인 외 157인

경찰법안(정부안), 의안번호 131119, 제안일자 1990.12.12. 정부

경찰위원회, 제9기 경찰위원회 백서, 2018.

자치분권위원회 보도자료“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2018.11.13.

김현숙(2017)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

## 토론

#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토론편

---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1** 중요한 토론회에 토론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보여온 경찰의 원죄로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 조직과 권한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2** 발제자는 이를 위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합의를행정기관(행정청)으로 ‘실질화’하고, 그 소속 하에 집행경찰로서 경찰청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에 대한 발제자의 제안에 대한 異見 보다는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 합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보완되기를 기대하는 제도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한국의 독립행정위원회 중 발제자가 기대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전범典範이 될 수 있는 위원회의 예를 하나 들어주실 것을 부탁하며 토론을 시작한다.

**3-1** 경찰 사무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사무에 일반적으로 친한 것인지 의문이 없지 않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반적 존재 이유는 준사법적 기능의 수행, 행정의 민주화와 이해의 조정,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각종 행정의 통합조정 등에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 사무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대 다음으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있다. 토론자로서는 국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단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고 궁극적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 위원들이 이러한 경찰을 통제할 지위에 있는지, 이를 두고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통제는 할 수 있으며 경찰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3-2**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최고 통치기관의 통제와 구속을 받지 않고 정치과정과 등거리를 유지(정치과정으로부터의 절연)한다는 국어적 의미로 이해되면 안 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법적 어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대통령을 수반하는 계층적 행정체제에서 대통령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정부조직법 제11조)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 경찰통제권을 경합적으로 구성하여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반행정과 달리 물리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간통제보다 최고통치기관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보다 실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을 제외하고 지방(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닌가 추론된다.

**3-3** 경찰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경합적 통제권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권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이원화하고(범죄수사청은 법무부 이관도 고려), 행정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사법경찰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기소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범죄수사청장은 민간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받도록 하며, 국회의 해임결의권을 보장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4** 토론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형성권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자문 내지 심의는 가능하겠지만, 결정권은 대의제 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할 사항으로 유보되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인권보호, 경찰의 부패방지과 청렴도 향상, 경찰의 감찰, 경찰평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국민의 고충처리 등 합의제 행정기관에 친한 사무에 한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민간통제를 조화하는 타당한 입법정책인 것으로 생각된다.

**4-1**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고 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임제 행정기관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기구로 전락되고 그럼에도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가 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 정치적 책임을 면탈하는 제도적 기재가 되고 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 행사의 가능성에 비해 이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과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4-2** 발제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을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행정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예산권 등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① 먼저, 위원의 정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위원회가 독임제와 같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숙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할 수 없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시행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에 광범위하게 관여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직무, 조직, 인사 등 원칙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준입법권을 보장하여 국가경찰위원회 규칙으로 규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경찰위원회에 조직 및 인사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율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직제와 정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조직편성, 정원 및 그에 대한 임용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경찰위원회에 예산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진정한 독립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예산을 임의로 통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

⑥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통령을 경유하여 경찰과 관련한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안하는 의안제안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지금까지의 경험상 한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제도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발제자의 의도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정치한 제도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정책형성권능을 포함한 경찰 일반을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독립행정위원회의 관할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과 국회의 경합적 통제권의 강화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인권분야와 전문적 지식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제한된 영역에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 토론

#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 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인가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유명무실했던 기존 경찰위원회 명칭에 ‘국가’만 붙인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며 국가경찰의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찰 감독기구라고 할 수 없음

정부·여당은 지난해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 등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된 것처럼 포장한 반면,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한층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경찰은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마주치는 공권력이라는 점, 어떤 권력기관보다 집권 정치세력에 정치적으로 종속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임

### 정부·여당의 경찰위원회 개혁은 ‘무늬만 경찰위원회 실질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경찰개혁과 관련해 2020. 11. 2.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관련 ‘경찰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그 구성을 9명으로 확대하며, 위원장 및 6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2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 및 부패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로 하며, 독자적인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여전히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로 두었고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사항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권을 존치하고 있는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도 크게 못 미치는 방안임

##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 (1)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경찰개혁네트워크안과 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

발제문에서 언급한 13대 국회의 야3당안으로 경찰법이 제정됐을 경우(1990년 3당합당이 없었다면) 여소야대 구도에서 경찰청 출범 당시에 이미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이었으며 국무총리-국가경찰위원회-경찰청의 체계는 이후 15대 국회 새정치국민회의안(1996년)이나 1999년 경찰청 자체 개정안에서도 제시됐던 방안

###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

현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대표성을 갖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위원 추천 및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찰 출신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상임위원을 독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또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행규정을 두어 성평등을 구현해야 하며 위원에 인권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함

### (3)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제도 도입

경찰개혁네트워크안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의 인권 의식 향상과 그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이를 위해 10명 이상의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하여 수사권까지를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위 실질화’ 권고를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권고와 연계하여 함께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바 있는데 경찰개혁네트워크안과 같이 국가경찰위원회에 두는 방안이 아니라 독임제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등 두 가지 모델로 제시하였음

현재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는 경우 기존 옴부즈맨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맨 기능을 두는 경우 국민권익위 등과 달리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경찰개혁네트워크안과 같은 독립적인 경찰감독기구로서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수적일 것임

다만 경찰개혁위 권고와 같이 별도의 기구(독임제 또는 합의제)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토론

# 국가경찰위원회 개혁방안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를 중심으로

---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경찰개혁의 방향

경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1) 경찰권의 축소와 분산, 2)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라는 두 가지 큰 방향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

경찰권/력은 여타의 공공기관과 달리,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직접적인 물리력의 성격을 띄며 여러 사회문제들의 사후적인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직임. 즉 강화되고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인프라, 복지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른 공권력이며, 이러한 권력과 시민들의 인권은 대체로 반비례 관계임.

하지만 '경찰권의 축소의 분산'을 이룰 수 있었던 자치경찰제도가 이번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로부터의 독립과 분산을 이루지 못한 채, 명패만 바뀌 단 격이 된 상황에서 13만 명에 이르는 경찰력의 축소와 분산은 요원한 일이 되었음. 게다가 검찰/국정원 개혁과 연동되어 경찰에게 권한은 더욱 집중되는 상황이 되었음.

###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의 중요성

과거보다 막강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는 더욱 중요해진 상황임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은 이런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며, 집행기구로서 경찰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안임.

현재 발제문에 제안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산하에 경찰청을 두는 것이며 경찰 관련 법령, 정책에 심의와 의결, 주요 경찰간부에 대한 인사권, 감사/감찰 징계요구권을 행사하는 정부부처임.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명과 추천, 성비, 경찰경력자 비율 제한과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경찰 출신 비율 상한을 두고 있음.

이러한 개혁안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국회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집행, 통제되도록 하기 위한 개혁안임. 하지만 동시에 국가경찰위원회는 산하에 경찰청을 두는 행정부 주요 부처의 위상을 분명히 갖고 있음.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

개혁안에서 제시된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제도 역시 국가경찰의 부당한 인권 침해 행위를 ‘외부’에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실효성있게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게 타당함.

##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의 필요성

경찰은 군대와 함께 국가기관 중 가장 폐쇄적이고 내부 개혁이 쉽지 않은 조직임.

국가경찰위원회와 같은 상위 기구를 통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함. 동시에 경찰권 행사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통제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큰 조직임.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의 필요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임. 1) 인권침해 진정/민원/청원의 신뢰성과 접근성 제고 2) 경찰 내부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있는 독립적 통제기구의 실효성 3)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와 개입의 필요성

현재 경찰 외부 조사기구는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가 있음. 최근 경찰청은 권익위와 업무협약을 맺어 ‘경찰 옴부즈만 활성화’를 밝혔지만 권익위는 별도 조사인력이 사실상

부재하고 경찰로부터 파견인력을 받는 조직으로 한계가 많음. 인권위 역시  
인권침해조사과에서 모든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권한의 제약이 큰 상황임.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법/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충해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를 실현하는 게 적절함.

이미 국가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하며 인권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이처럼 군대,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에 의한 통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법 개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이러한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과  
조응해서 적절히 배치될 필요가 있음.



## 토론

#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 국가경찰위원회의 법령상 지위와 현황, 실질화의 필요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은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둠(제7조 제1항).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매우 광범위함.

### 경찰법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 경찰행정과 관련된 과태료·벌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 경찰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경찰법 제14조 제2항)

국가경찰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음.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이 있음(경찰법 제10조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위원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함(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6조). 다시 의결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 결과에 기속되는지와 관련한 규정은 없음. 사례도 없음. 그러나 규정 자체에서 독립적이지 않은 한계로 작용

역사적으로 경찰의 중립성 요구는 헌법상 요구였음. 4.19.혁명 이후 제3차

개헌('60.06.15.)시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정부조직법」에 규정해야 함을 명시한 헌법조항이 신설됨. 당시 헌법 제75조는 “①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

경찰의 중립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임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2021. 7. 5. 제468회 회의에서 국가경찰위원회 3단계 실질화 방안 계획 심의·의결

### 1단계 : 합의제 행정기관 명확화

현재도 위원회 소관 독자적 고유의 업무가 존재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인정됨에 문제가 없음.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장에게 위원회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공동 결재 권한 부여(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법률에 명시되어야)

### 2단계 : 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법률 개정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 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임명. 상임위원 2인 포함 위원 수 9인으로 확대.

### 3단계 : 중앙행정기관 승격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 경찰 관련 법령을 위원회가 주관부서로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개입 권한 폐지. 국가경찰위원 지명권자를 다양화하되, 국회·대법원장 지명위원 수는 1인으로 제한.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청을 둠.

토론회자료집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발행일 2021.08.18

발행처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담당 최재혁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